

GGAC 경기아트센터
GYEONGGI ARTS CENTER

기본사항 <인사기록 기재사항으로 정확하게 기재>					
모집분야	2026년 경기아트센터 제2차 하우스어서 채용				
성명	(한글)	(한자)			
영문이름 대소문자 정확하게 표기	(여권상 영문)				
생년월일 같은 경우 하나만 기재	(주민등록상) ☐ 양력 / ☐ 음력 [년 월 일]				
	(실제 생일) ☐ 양력 / ☐ 음력 [년 월 일]				
연락처(휴대전화)					
이메일 주소					
주소 같은 경우 하나만 기재	(등본상 주소)				
	(실거주지 주소)				
급여용 통장계좌	은행명 : / 계좌번호 :				

2026년 올해 이년

성명 : (인)

채용결격사유 본인 확인서

본인은 경기아트센터 하우스어써로 임용됨에 있어 경기아트센터 인사규정 제13조 · 관련 법령에 따른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며, 임용 후 허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고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.

결격사유	해당여부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	☐ 해당 ☐ 미해당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미해당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,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미해당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미해당
5.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	☐ 해당 ☐ 미해당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	☐ 해당 ☐ 미해당
6의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	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	☐ 해당 ☐ 미해당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	☐ 해당 ☐ 미해당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	☐ 해당 ☐ 미해당
6의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·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	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	☐ 해당 ☐ 미해당
나. 「아동 ·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· 청소년대상 성범죄	☐ 해당 ☐ 미해당
7.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미해당
8.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미해당
9. 아트센터의 징계로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미해당
10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	☐ 해당 ☐ 미해당
11.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	☐ 해당 ☐ 미해당
1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	☐ 해당 ☐ 미해당
13.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미해당

2026년 월 일

성 명 :

[인]

[재]경기아트센터 사장 귀하

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(본인)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시	처리기간	즉시
신청인 (대상자)	성명(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)			
	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/국적) ※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.			
운영 또는 취업정보	운영예정 또는 취업(예정)기관명 경기아트센터		전화번호 031-230-3200	
	운영예정 또는 취업(예정)기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20, 경기아트센터			
	조회용도	[]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조회 [○] 취업(예정)자에 대한 조회(직종:서비스직)		

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 조제4항과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본인의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 년 월 일

신청인

(인)

수원남부지방경찰서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. 신분 증명서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) 사본 1부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-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,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.
- 운영예정 또는 취업(예정) 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하며, 의료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면허번호를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-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(기간제 포함),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-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(채용, 공공근로)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----- 해당 ☐ 비해당 ☐

※ 공직자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

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 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

2. ‘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’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

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중, 퇴직후 불문)

※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

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
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
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※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 → 부패행위 비해당
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 → 부패행위 해당

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

3-2. 현재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 내)
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)

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
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 내)

4-3. 권익위법('16.3.29. 제14145호로 개정된 것) 시행('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
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
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 해당 여부 -- 해당 ☐ 비해당 ☐

1, 2, 4-1, 4-2, 4-3(모두 충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 해당 여부 -- 해당 ☐ 비해당 ☐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(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)

년 월 일

지 원 자 (서명)

친·인척 현황 조사 확인서(신규채용자용)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: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 관련 친인척 채용현황 조사에 이용
-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
 - 개인 : 성명, 소속, 직위, 신규채용 현황, 친·인척 재직자 현황
- 개인정보 보유·이용 기간: 채용절차 종료일로부터 3년
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본인은 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”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동의인 : (서명 또는 날인)

재단법인 경기아트센터 사장 귀하

1. 귀하의 인적사항을 아래의 표에 작성하여 주십시오.

성 명	채용일자	채용방식	직 종	담당업무

2. 경기아트센터에 재직 중인 임직원 중에 귀하의 친·인척이 있습니까?(✓체크)

가. 있다.

나. 없다.

2-1.(‘있다’고 답변한 경우) 친·인척의 재직현황을 아래의 표에 작성하여 주십시오.

관 계	성 명	생년월일	성별	소속	직급/직위

※ (참고) 친·인척 범위 4촌 이내 친족

구분		0촌	1촌	2촌	3촌	4촌
본인	친가	부부	부모 자녀	• 조부모 • 형제 및 그 배우자	• 백부, 숙부, 고모 및 그 배우자 • 형제의 자녀(조카)	• 백부, 숙부, 고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
	외가		-	• 외조부모	• 외백부, 외숙부, 이모 및 그 배우자	• 외백부, 외숙부, 이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
배우자	친가		부모	• 조부모 • 형제 및 그 배우자	• 백부, 숙부 및 그 배우자 • 형제의 자녀	• 백부, 숙부의 자녀 및 그 배우자
	외가		-	• 외조부모	• 외백부, 외숙부, 이모 및 그 배우자	• 외백부, 외숙부, 이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

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채용기관	기관명	재단법인	채용방법	채용직위(직급)
	채용사유	경기아트센터	공개경쟁채용	단시간근로자
2026년 경기아트센터 제2차 하우스어서 채용				
채용대상자 (확인인)	성명	주소		
	연락처	생년월일	채용 예정일	

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

① 가족채용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(자회사인 경우 모회사)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② 예외 해당 여부	①에서 “예”에 답변한 경우,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?	[] 예 [] 아니오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채용대상자(확인인) 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① “가족채용”의 가족은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.
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.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